

제출하는 곳	해양수산부장관	처리부서	안전관리관
수 수 료	-	처리기간	10일
유 의 사 항	☐ 협정기간의 연장 ○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90일 전까지 협정신청서에 제8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협정체결 당시와 변경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		